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372호

의 안 명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 결 일 2026. 9. 7.

주 문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본

[별지]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2026. 9.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1. 추진배경 ····· 1

2. 관련제도 ····· 2

3. 현황 및 문제점 ····· 5

1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부족 ····· 5

2 입지선정위 주민 대표성과 숙의 과정 미흡 ····· 7

3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 8

4. 개선방안 ····· 9

1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강화 ····· 9

2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 강화 및 숙의 과정 도입 ····· 11

3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마련 ····· 12

5. 조치사항 ····· 14

(참고) 관련규정 ····· 15

본

1 추진 배경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은 '26년 1월부터, 그 외 지역은 '30년 1월부터 시행)**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신설 또는 증설)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그동안 매립해 온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집값 하락 우려 등 **주민 반대**로 다수 지자체는 **설치에 난항**

<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현황 >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의 대부분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 막혀 직매립 금지 시행이 예고(2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된 지 4년이 지나도 **신규 소각장을 한 곳도 건설하지 못함**

- 서울시: **마포 소각장**('26.2. **2심 패소**, 상고포기)/ 기존 시설 현대화도 주민반대에 직면
- 경기도: 의왕, 화성 등 **7곳은 입지선정도 못함**, 지역 내 찬성·반대측 주민 간 대립
- 인천시: 서구 **청라소각장 주민 반대**(입지선정위 구성 형평성 저하)로 입지선정절차 중단

○ 소각시설 부족으로 타 지자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 원칙'**(자기 지역 발생 생활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 위배에 따른 **지역간**(수도권과 충청권) **갈등 발생,** 처리 비용 **상승**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초래**

< 민간 소각시설 위탁 비용 >

❖ 실태조사 결과 민간 소각시설 위탁 시 공공 소각의 경우 보다 단가가 5~10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남 (공공소각 12만원 vs. 위탁소각 17~22만원) ('26.3.31.기준)

- 수도권 지자체(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외 지역 민간위탁 처리량 : '25년 약 21만톤

○ **소각시설**은 지역사회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불투명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음

- 갈등 예방을 위한 **입지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등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본

2 추진 경과

○ 수도권(서울.경기.인천.하남), 충청권(아산.서산.세종.청주)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소각시설 확충 실태조사 ----------‘26. 3.~4.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26. 4.

○ 지자체 소각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사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 등 언론자료 수집 ----------‘26. 5.

○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갈등관리 주제 공청회 개최 ------‘26. 6. 24.

○ 기획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후부) 사전협의 ----------‘26. 5.~7.

3 관련 제도

1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예외적 허용

○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 **(처리원칙)**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가연성은 제외)만을 매립

❖ **(목적)**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 매립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 폐자원 에너지화 유도

○ 한편, **산간·오지·도서**지역, **재난**발생, 폐기물처리시설 **보**수 등의 경우에는 직매립 **예외적** 허용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 ’26년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총 16만3천t(서울 8만2천335t, 경기 4만5천415t, 인천 3만5천566t)/ 소각시설 정비 시 민간위탁 의존도 급격한 상승 방지,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확보)

본

2 폐기물처리시설[1] 입지선정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절차는 아래와 같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①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입지선정계획 포함 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등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1항~제2항

⇒

②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원: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시·도의원 등

◦ 역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선정, 타당성 조사결과 공개, 최종 입지선정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 ~ 제6항

⇒

③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 20일 이상 주민열람

◦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입지선정위에 의견제출

◦ 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제6항/ 시행령 제10조

⇒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3조

⇒

⑤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결정·고시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설치기관, 대상지역, 부지면적 등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1)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함(여기서는 **소각시설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매립시설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
-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 직·간접 영향권 범위 >

❖ 직접 영향권: 인체 등에 직접적인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주 대책 등이 필요한 지역

❖ 간접 영향권: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시설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대 가능)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권익 대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소각장의 경우 지자체)과 **갈등 중재**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 11명 이내(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또는 15명(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이내

❖ 지방의원, 주민대표(정원의 50% 이상), 전문가(주민대표 추천 2인)로 구성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함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및 권한 >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주민지원기금 사용처)**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 요원의 추천, 간접영향권의 범위 설정 등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

본

□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용·관리 하여야 함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②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
③ 타 지자체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가산금(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자체의 출연금

○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민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사용료 감면** 등은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민지원**기금에 출연**

4 현황 및 문제점

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부족

○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4항)

- 실제는 **지자체 주도하에** 예산집행, 과업지시 등이 이루어져 지자체의 **의도대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는 **불신을** 초래하고, 그 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밀실행정 논란**을 막지 못하는 실정

< 입지후보지 선정 시 타당성 조사 관련 갈등 사례 >

❖ 법원은 서울시 마포 소각장 증설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서울시 고등법원 2심 패소 2026.2.)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은 광주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전문기관 선정** 권한을 광주광역시가 행사한 점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 (뉴스픽쳐 2025.7.16.)

❖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을 소각장 최종 입지로 선정하자 주민들은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유도** 되었다고 주장 (순천 광장신문 2025.11./ 행정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 갈등 발생)

- **교차검증**(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후 점수 합산)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용역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 확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오류 및 편향성 논란** 발생

- 복수의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사전 내정 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왜 우리 동네인가'**에 대한 설득력 부족

❖ 세종시는 입지 공모를 거쳐 전동면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은 복수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 비교평가 없이 진행되었다며 항의 (중도일보 '25.12.8. 등)

❖ 서울시는 입지선정위 평가 결과 복수의 후보지 중 가장 높게 나온 마포구 상암동을 단수 후보지로 선정 발표, 주민들은 다른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며 반발(TBS뉴스 '22.9.15.)

○ 타당성 조사는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평가항목**과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가능성과 그 결과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불신 초래**

본

❖ 업무처리지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필수사항(p13.)
- ○시설규모의 산정 근거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근거(지하화 필요성·타당성 검토)
- ○주변 지역간의 최적화 추진결과
- ○기존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 ○주민 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지보상, 민원해소 결과 등

2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과 숙의과정[2] 미흡

○ 현행 법령은 소각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민대표(3명 이상 6명 이내)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소각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과 **복수 후보지**의 경우 각 후보지에 대한 **대표성 미보장** 등으로 입지선정위 구성의 **형평성 논란 발생**

< 입지선정위 구성 관련 갈등사례 >

❖ 법원은 서울 마포 소각장 건립 시 입지선정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 (연합뉴스 2026.2.)

※ 마포구 주민들과 마포구는 입지선정위 구성 당시 **마포구 주민대표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위원회가 운영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상실을 강력히 주장

❖ 고양시는 입지선정위 구성 당시 소각장 후보지 **인근 주민이 아닌**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주민 각 1명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주민들은 이는 관련법 취지에 어긋난 위법행위라고 주장(고양신문 2024.5.25.)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2]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또한, **지자체**가 소각시설 입지선정위 **운영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예산 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입지선정위 운영의 **공정성** 논란과 이에 따른 갈등 발생

-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등 공정성 **강화** 필요

2) 숙의 과정: 단순한 표결이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넘어 구성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 상호토론, 깊은 생각(숙의)을 거쳐 합의나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본

○ 소각시설 입지선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공고·열람, **설명회·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고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에는 한계**

- 단순히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넘어**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 마련 필요

< 주민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갈등사례 >

❖ 서울 마포소각장 건립을 위한 2차 고양 주민설명회 개최 시 참석한 주민들은 △ 주민설명회지만 **소각장에 대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단점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 여러 **후보 입지**를 두고 유력한 곳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서울 마포 소각장 증설 반대(이데일리 2023.2.1.)

❖ 수원시 영통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등 소수의견 반영**만으로 결정된 영통소각장 운영 연장 및 대보수를 **반대한다며** 행정소송 제기(경인일보 2023.3.24.)

3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 소각시설의 경우 **설치되는**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그 외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은 **편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피해** 지역과 **편익** 지역 간 **지역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 현행 법령은 **기금 조성**을 통한 공동사업, 시설 보상 위주의 **간접 보상에 그침** (직접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

❖ **주민지원기금조성:** 지자체 **출연금** +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 등**

❖ **가구별 직접 지원:** 주민지원기금 중 일부/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 형태 지원이 원칙)

-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간접지원** 위주여서 주민 개인별 **체감되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건강** 및 **집값 하락** 등을 **더 우려**하여 반대

본

< 화성특례시 막대한 지원에도 입지선정 실패 >

❖ 화성특례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 2021년부터 약 2천억을 들여 일 25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 총 5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진전이 없음

❖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이나 **300억 상당의 출연금** 지원, 연간 반입 수수료 **약 16억원의 기금**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도 효과가 없었음** (화성신문 2025.12.3.)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각시설을 설치** 하더라도 **지역 생활환경**과 **미래가치가 개선**되는 것임

-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피해보상 중심**에서 **지역발전 패키지 중심으로 전환**, 주민선호시설 등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지역상생 방안** 검토 절차 마련

5 개선 방안

1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강화

○ **2개 이상**의 전문연구기관(1곳은 엔지니어링업체, 다른 1곳은 대학연구소 등의 방식)의 타당성 조사 및 **교차검증**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성 논란 차단**

- **복수 기관 조사 시 비용 및 기간 증가**, 책임소재 분산 등의 한계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의무화보다는 **필요한 경우 실시**

< 교차검증 방식 >

❖ **취 지:** 하나의 용역 기관이 조사한 결과는 오류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다시 맡겨 평가의 오류를 줄임

❖ **운영방식:** 최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A 엔지니어링이 수행했다면, 그 조사과정의 데이터(환경성, 경제성, 교통 등)가 적절했는지를 국책연구기관 B 사나 대학연구소 같은 제3의 기관에 검증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대조

❖ **효 과:** 특정 업체와 지자체가 짜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주민들의 의혹 제기를 차단

○ 예산집행에 있어 **입지선정위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로 개선하여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어 **지자체**의 관여 **최소화**

> ❖ 실태조사('26.4.) 결과 일부 지자체(@@시 등)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선정 범위(엔지니어링업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만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하고 그 후 업체선정, 예산집행, 과업지시 등은 지자체가 수행한 후 최종 결과만 입지선정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복수의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 및 **비교평가** 도입

- 복수의 후보지별 장·단점, 제외 사유, 평가 기준, 점수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제시

○ 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기술성·사업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 **분야별 세부 항목** 제시

< 타당성 조사 분야별 평가항목(예시) >

> ❖ 경제적 타당성: 사업자 수익성만으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 지양하고 지역경제 기여, 폐열활용, 지역개발 연계 등 포함
> ❖ 환경적 타당성: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 안전 등의 사회환경 포함
> ❖ 사회적 타당성: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시설현황 및 주민설문조사, 지역상생방안 등 사회적 수용성 판단

<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

> ❖ **차이점:** ①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vs. 환경영향평가법), ②목적(복수 후보지 중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입지가능성 검토 vs. 선정된 하나의 입지에 대한 환경조사)
> ❖ **유사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인 점에서 유사한 면도 있으므로 조사 결과와 의견을 **상호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평가**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의 평가 단계별로 **입지선정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 입지선정위는 타당성 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시 **숙의형 주민참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또는 시행령 개정 (법 제9조 관련)
① 입지선정위가 타당성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차검증 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입지선정 절차 관련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
② 타당성 조사 예산은 입지선정위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토록 명시 ③ 복수의 입지 후보지 대상 타당성 조사 및 비교평가 도입 ④ 타당성 조사 평가항목 및 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제시 ⑤ 타당성 조사 단계별(계획, 중간, 최종) 입지선정위 보고 및 의견청취

2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 강화 및 숙의 과정 도입

○ 입지선정위의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인접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복수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복수 후보지**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입지선정위 구성의 **공정성 논란 차단**

○ 입지선정위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방청** 허용, **온라인 생중계,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입지선정위 의결로 별도 결정, 예외규정 마련

○ 입지선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의형 주민 의견수렴** 병행

- 입지선정위를 대체하는 주민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 구성보다는 **입지선정위**와 **숙의형 주민참여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입지선정위와 숙의형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충돌 방지)

본

- 입지선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지선정위가 주관**하는 **숙의형** 주민참여 절차를 활용토록 개선

- 숙의형 주민참여는 **최종 결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입지선정위의 **판단을 돕는** 보조적 절차로 활용하되 **숙의형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공적인 방법으로 제시)

- 숙의형 설명회, 소규모 분임 토론, 주민·전문가 공동 워크숍, 이해관계자 토론회, 시민합동조사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

<개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7조 관련)
① 입지선정위 주민대표성 강화/ 주민대표 선정기준 명확화 - 복수후보지 주민대표성 보장,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등
입지선정 절차 관련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
② 입지선정위의 회의운영 공개(방청허용, 온라인 생중계 등) -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입지선정위 의결로 결정, 예외규정 마련 ③ 입지선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지선정위가 주관하는 숙의형 주민참여 절차 마련

3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마련

○ 소각장 입지결정 이후가 아닌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지역상생 방안을 검토**하도록 타당성 조사 항목에 포함

- 타당성 조사 평가항목 및 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제시와 연계하여 **사회적 수용성** 항목으로 **폐열 활용 방안, 주민친화형 시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개선

- 현금지원, 요금감면 등 개별보상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도시재생, 생활 SOC확충, 폐열 활용,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전체의 가치 향상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자체의 경우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개발계획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사적 차원의 지역상생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할 필요

<개선사항>

입지선정 절차 관련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
① 타당성 조사 항목에 지역상생 방안 포함

본

6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치내용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1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 강화** **① 교차검증제 도입** - 입지선정위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② 입지선정위의 의결을 거친 후 타당성 조사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침에 예산 집행 절차 명시 ③ 비교평가제 도입 - 복수의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비교평가 ④ 타당성 조사 평가항목 및 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제시 ⑤ 타당성 조사 단계별(계획, 초안, 본안)로 입지선정위에 보고 및 의견청취 ⇨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개정(①) 및 관련 지침(②~⑤)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개정 (2027.8.31.) 시행령개정 (2027.3.31.) 지침제정 (2027.3.31.)
	2 입지선정위의 주민대표성 강화 및 숙의 과정 도입 **① 입지선정위의 주민대표성 강화→ 시행령 개정** - 주민대표 선정기준 명확화 - 복수 후보지 주민대표성 보장,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② 입지선정위의 회의운영 공개 (방청 허용, 온라인 생중계 등) -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입지선정위 의결로 결정, 예외규정 마련 ③ 입지선정위가 주관하는 숙의형 주민참여 절차 마련 - 입지선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①) 및 관련 지침(②,③) 제정**		
	3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마련 ① 타당성 조사 항목에 지역상생 방안 포함 ⇨ **관련 지침 제정 시 반영**		

참고 관련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생략)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 2. (생략)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 ⑩ (생략)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② 삭제 <1999. 2. 8.>

③ 삭제 <1999. 2. 8.>

④ ~ ⑤ (생략)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

본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 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생략)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본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생략)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 3) (생략)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생략)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생략)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 ④ (생략)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

② ~ ⑥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이하 생략)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2025. 10. 1.>

1. ~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생략)

본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이하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본

2. ~ 6. (생략)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 18.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 마. (생략)
2. (이하생략)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7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본

정본입니다.

2026. 9. 7.

국 민 권 익 위 원 회